

[별표 14]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(제9조 관련)

1.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(상한금액)

공동주택

(단위 : 천원, 부가세별도)

비 목	세부항목	세 대 수			비 고
		500세대 미만	500~1500세대 미만	1500세대 이상	
심사비	서류심사 M/D	4	5	6	심사위원 및 심사운영비용 500,000원/MD
	현장심사 M/D	4	5	6	
	총 M/D	8	10	12	
	심사비용	4,000	5,000	6,000	
심의비	심의위원회	1,000	1,000	1,000	심의위원회 운영비
그 밖의비용	회의비	200	200	200	심사위원 회의비 (회의자료 준비 및 운영)
	행정인건비	600	800	1,000	일반행정 업무 등
	기술경비	240	240	240	자료조사, 회의자료 등
계		6,040	7,240	8,440	
간접비	사무실임차료,통신비, 사무용품, 우편료 등	600	720	840	상기비용의 10%
총 계		6,640	7,960	9,280	
비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통비 : 현장심사시 지방일 경우 신청기업에서 지급할 수 있음 • 납부회수, 기간, 방법은 인증기관에서 정할 수 있음 				

2.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시 추가심사수수료

공동주택(예비인증)

(단위 : 천원, 부가세별도)

비 목	세부항목	세 대 수			비 고
		500세대 미만	500~1500세대 미만	1500세대 이상	
심사비	서류심사 M/D	3	4	5	심사위원 및 심사운영비용 500,000원/MD
	현장심사 M/D	2	2	3	
	총 M/D	5	6	8	
	심사비용	2,500	3,000	4,000	
심의비	심의위원회	1,000	1,000	1,000	심의위원회 운영비
그 밖의비용	회의비	200	200	200	심사위원 회의비 (회의자료 준비 및 운영)
	행정인건비	300	300	300	일반행정 업무 등
	기술경비	240	240	240	자료조사, 회의자료 등
계		4,240	4,740	5,740	
간접비	사무실임차료, 통신비, 사무용품, 우편료 등	400	470	570	상기비용의 10%
총 계		4,640	5,210	6,310	
<p>· 교통비 : 현장심사시 지방일 경우 신청기업에서 지급할 수 있음</p>					